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59

발의연월일: 2023. 1. 27.

발 의 자:민형배·황운하·김성주

문정복 • 박상혁 • 양정숙

강득구 • 최종유 • 김홍걸

이수진(비)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때,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를 위해, 통상 벌채면적의 30% 수준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.

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벌채면적을 자제하는데, 제도가 뒤처집니다. 현재 시행규칙은 산림에서 벌채 구역 면적이 5ha 이상이면 벌채면적 의 10% 이상을 남기도록 할 뿐, 잔존산림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.

산림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면적의 10% 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, 남겨진 목재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.

이에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목재수확제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36조제4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,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제9항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에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|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(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제36조(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고 등) ① ~ ③ (생 략) 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|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을 하려 를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는 자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 역에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있다. 할 수 있다. ⑤ • ⑥ (생 략) ⑤ · ⑥ (생략) 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 -----제6항: 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

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것으로 본다.

- ⑧ 제1항, 제2항 단서 및 <u>제4항</u>에도 불구하고 풀베기,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.
- ⑨ 제1항, 제2항 단서 및 <u>제4항</u>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 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 반로 및 작업로(作業路) 설치에 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은 제1항, 제2항 단서 및 <u>제4항</u>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 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

⑧제5항
⑨제5항
①
<u>제5항</u>

지와 <u>제8항</u>에 따른 임산물 운 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 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·점 검하여야 한다.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은 <u>제9항</u>에 따른 확 인·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<u>제9항</u>
①
<u>제10항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